산학협력단산업자문운영규정 10-1-4

규정번호 10-1-4
제정일자 2013.3.1
최근개정 2023.12.11
개정차수 2차 개정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우리대학 전임교원과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우리대학에 소속되어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의 구성) ① 산업교원은 우리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분야, 경영분야, 디자인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활동계획 시행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별지1]의 산업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별지2]의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10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를 원칙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프리미엄 멤버십(유료가족회사) 가입 업체는 별도의 산업자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 납부한 등급별 연회비를 통해 산업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3.01.20.)

④ 외부 재원(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산업자문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로부터 별도의 산업자문료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제6조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0%를, 산

학협력단에 10%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년 6월말, 12월말에 2회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③ 프리미엄 멤버십(유료가족회사) 가입을 통해 진행한 산업자문(1일 4시간 이상)의 기술지도(자문)비는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비를 통해 별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01.20.)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 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제8조(기타사항)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4항)

[별표 1]

산업자문 신청서

지원분야 (해당분야선택)	기술지도 / 경영지도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희망자문기간	20 . . ~ 20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산업교원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	성명	소속/부서	연락처	참여율(100%)	비고
현재의 문제점					
산업자문 희망사항					
성공시 기대효과					
기타제안					

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기 관 : 대 표 : (인)

(사전에 선정된 경우) 명지전문대학 산업교원 : (인)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2]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지원분야 (해당분야 선택)	기술지도 / 경영지도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명			
자문일시(기간)	20 . . ~ 20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자문 내용 및 결과			
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위와 같이 신청기관(업체)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산업교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붙임 : 산업자문료 입금증 사본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